



VII

의료 및 건강

1. 의료비 지원	118
2. 자살예방 지원	123
3. 정신건강복지센터	124
4.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25
5.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126
6. 성폭력·성매매 피해 지원	127
7. 임신·출산 지원	133
8.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136
9. 청소년성문화센터	138

07

의료 및 건강

의료비 지원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청소년(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지원 내용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등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등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지원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 절차	1. 시·군·구(읍·면·동)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서 접수·등록	→	2. 요양기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자격 확인 후 요양급여 실시	→	3. 차상위대상자 “안내문 수령” 변동사항 공단 및 관할 시·군·구에 즉시 신고
문의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1577-1000)				

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 소득 대비 10%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질환별 입원진료비 및 외래진료비 모든 질환(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50-80% 차등 적용으로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지원 조건	퇴원 후 신청 입원 중 신청	지급신청 환자	자격심사 공단 (지사)	개별심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위원회	지급결정 공단 (지사)	지급의뢰 공단 (지사)	지급 공단 (본부)
지원 절차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입원 중인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3)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전 국민 대상 ※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적용대상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으로 나누어 관리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보험급여, 건강검진 등 전 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table border="1"> <tr> <td>자격</td><td> 회사에 다닐 경우: 직장가입자 회사에 다니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 등 ※ (예시)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됨. 다만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공단에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해서 일정 요건이 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td></tr> <tr> <td>보험료 부과</td><td>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부과 -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td></tr> <tr> <td>보험료 납부</td><td> 직장가입자: 월급에서 공제되며, 사업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 지역가입자: 주소지로 배송되는 고지서(전자고지)를 기준으로 납부 - 자동이체, 가상계좌, 전자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 부과 및 압류, 병·의원 이용제한 등이 될 수 있어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함 </td></tr> <tr> <td>보험급여</td><td>적용대상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치료,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대하여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으로 제공</td></tr> <tr> <td>건강검진</td><td>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가능</td></tr> <tr> <td>장기요양</td><td>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신체활동 등을 지원</td></tr> </table>	자격	회사에 다닐 경우: 직장가입자 회사에 다니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 등 ※ (예시)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됨. 다만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공단에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해서 일정 요건이 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부과 -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 월급에서 공제되며, 사업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 지역가입자: 주소지로 배송되는 고지서(전자고지)를 기준으로 납부 - 자동이체, 가상계좌, 전자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 부과 및 압류, 병·의원 이용제한 등이 될 수 있어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함	보험급여	적용대상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치료,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대하여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으로 제공	건강검진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가능	장기요양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신체활동 등을 지원
자격	회사에 다닐 경우: 직장가입자 회사에 다니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 등 ※ (예시)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변경됨. 다만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공단에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해서 일정 요건이 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부과 -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 월급에서 공제되며, 사업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 지역가입자: 주소지로 배송되는 고지서(전자고지)를 기준으로 납부 - 자동이체, 가상계좌, 전자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 부과 및 압류, 병·의원 이용제한 등이 될 수 있어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함												
보험급여	적용대상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치료,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대하여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으로 제공												
건강검진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가능												
장기요양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신체활동 등을 지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4)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1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와 타법적용자, 행려환자 2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지원 절차	1차 의료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2차, 3차 의료기관 이용						
	(1차) 의원,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의뢰 (의료급여 의뢰서) → → 회송 (의료급여 회송서)	(2차) 병원, 종합병원	의뢰 (의료급여 의뢰서) → → 회송 (의료급여 회송서)	(3차) 상급종합병원		
신청 방법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5)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자립준비청년 요건①만 갖추면 지원 대상으로 결정 ①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 세부 기준은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름 ②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증 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으로 청구 시 지원 참고.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 8. 이후 보호종료된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 2. 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부담금 - 지원 대상자는 본인 일부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www.kfsp.or.kr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전 연령 누구나
지원 내용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 -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정서지지 상담 -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공공·민간·복지기관 협력 지원
지원 절차	<pre> graph LR A[응급상황 대상자] --> B[정신과적 응급 (상담, 환각)] B --> C[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C --> D[위기관리 및 응급입원 자살예방 상담 및 위기관리] </pre>
문의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가능

정신건강복지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보조 가능
신청 방법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용 가능
처리 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지원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제공
기타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의 경우 1개소, 인구 60만 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2개소 이상 설치, 인구 20만 명당 1개소 추가 설치 ※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검색
문의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www.nyhc.or.kr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보호, 자립, 교육 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정서와 행동 영역에서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9세(입교일 기준)에서 18세(수료일 기준)까지의 청소년과 보호자에 대해 상담과 치료 등을 지원
선정 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학교, 시·군·구 교육지원청, Wee스쿨,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관으로 신청하시거나 청소년디딤센터로 직접 신청을 하시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을 지원
지원 내용	- 상담, 치료, 보호, 교육, 숙식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상담·치료: 정신의학 전문의, 심리치료사, 상담사 등의 종합적·전문적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학습지원: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운영(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자립지원: 수료 후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진로탐색, 체험활동 등 서비스 제공 생활·보호: 거주형 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지원 절차	입교상담 및 지원: 청소년안전망시스템(gov.youthsafety.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입교심사: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입교생 선발 입교 및 지원: 입교 후 적극 지원
문의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www.nyhc.or.kr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053-665-6900 www.youthfly.or.kr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신청 방법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를 고려한 상담 등 이용자에게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총 8회 제공(바우처) - 서비스 유형별 단가 및 자격기준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서비스 단가	1회당 8만 원(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상이함)	1회당 7만 원(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상이함)
기타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결정 후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단,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증명서류(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성폭력·성매매 피해 지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1)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보호·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여성폭력 피해자
신청 방법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구조 - 긴급보호 조치: 위기 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 연계 조치 - 긴급피난처 운영: 임시보호 및 숙식 제공, 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상담소 등 유관기관 연계 -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타 보호시설로의 연계가 어려운 경우 30일까지 연장 보호 가능 - 긴급피난 현장상담 지원: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상담 및 의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기타	24시간 Hot-Line 운영 365일 24시간 전화상담원 배치
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 -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에서 1366 검색 후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과 친구 맺기 후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상담

2) 해바라기센터

▶ 해바라기센터 www.sunflowercenter.or.kr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에 41개소가 있으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지원이 필요할 때,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위기·응급상담, 추가·지속상담,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법의학적 증거물(증거 채취 응급키트) 확보, 응급처치 및 후속 진료, 의료상담	영상 증인신문,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법률상담 및 자문, 사건 지원
	심리지원	동행지원	수사지원
	심리평가 및 치료 심리지원 상담 치료프로그램 등	아동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 이동 지원	진술녹화 제도, 여성 경찰관의 수사 상담, 국선변호사제도 등
이용 방법	• 전국 40개소 전화, 내방, 방문, 사이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이용		
유형	구분	내용	
	통합형(16개소)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가족	
		특징: 장기 상담과 치료지원	
	아동형(7개소)	대상: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 피해자 가족	
		특징: 외상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위기지원형(17개소)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가족	
		특징: 피해자의 긴급지원과 수사에 주력	

● 전국 해바라기센터(41개소) 연락처

통합형(16개소)					
지역	위탁병원	연락처	지역	위탁병원	연락처
서울	서울대병원	02-3672-0365	강원동부	강릉동인병원	033-652-9840
부산	부산대병원	051-244-1375	강원남부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033-735-1375
대전	충남대병원	042-280-8436	충남	단국대병원	041-567-7117
울산	울산병원	052-265-1375	전남	영광기독병원	061-351-4375
경기남부	아주대병원	031-217-9117	전북서부	원광대병원	063-859-1375
경기북서부	명지병원	031-816-1375	경북동부	포항성모병원	054-278-1375
경기중부	순천향대 부천병원	032-651-1375	경남서부	경상대병원	055-754-1375
강원서부	강원대병원	033-252-1375	제주	한라병원	064-749-5117
아동형(7개소)					
지역	위탁병원	연락처	지역	위탁병원	연락처
서울	연세의료원	02-3274-1375	경기	분당차병원	031-708-1375
대구	경북대병원	053-421-1375	충북	건국대 충주병원	043-857-1375
인천	가천대길병원	032-423-1375	전북	전북대병원	063-246-1375
광주	전남대병원	062-232-1375			
위기지원형(18개소)					
지역	위탁병원	연락처	지역	위탁병원	연락처
서울동부	경찰병원	02-3400-1700	경기서부	단원병원	031-364-8117
서울남부	보라매병원	02-870-1700	충북	청주의료원	043-272-7117
서울북부	서울의료원	02-3422-4101	충북서남부	홍성의료원	041-635-1375
부산동부	부산의료원	051-501-9117	전북	전북대병원	063-278-0117
대구	대구의료원	053-556-8117	전남동부	성가롤로병원	061-727-0117
인천동부	인천의료원	032-582-1170	전남남부	강진의료원	061-434-1375
인천북부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32-280-5678	경북북부	안동의료원	054-843-1117
광주	조선대병원	062-225-3117	경북서부	김천제일병원	054-439-9600
경기북동부	의정부의료원	031-874-3117	경남	마산의료원	055-245-8117

3)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 상담 지원 - 관련 문의 및 지원 내용 안내 • 삭제 지원 - 유통 플랫폼별 피해자 자료 삭제 요청 - 삭제 지원·모니터링 리포터 제공 - 불법 유통 플랫폼 감시 • 수사 지원 연계 - 채증 필요 시 채증 자료 수집 및 정리 - 추가 증거 제출 및 수사과정 모니터링 • 기타 지원 연계 -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이용방법	• 온라인, 365일 24시간 전화상담원 배치
문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https://d4u.stop.or.kr • 여성긴급전화 ☎1366

※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전사·합성·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4) 성매매피해 상담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의료 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 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탈 성매매를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성매매 피해를 받았거나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여성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현장 방문 -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참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이용방법	전화 상담 교육신청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735-1050, www.stop.or.kr - 여성긴급전화 ☎1366

●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28개소) 연락처

지역	상담소명	연락처
서울	여성인권상담소 소녀의 집	02-482-0746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	02-814-3660
	성매매피해상담소 이름	02-953-6280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02-3394-7936
	여성인권센터 보다	02-982-0923
	십대여성인권센터	02-2633-1318
부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051-816-1366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051-247-8292
대구	힘내	053-422-4898
인천	희희낙낙상담소	032-501-8297
광주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062-232-8297
대전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042-223-3534
울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052-249-8297
경기	성매매피해상담소 WITH US	031-742-1366
	오늘	031-222-0122 070-8915-0829
	여성인권센터 쉬고	031-948-8030
	두레방	031-841-2609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031-651-6100
강원	춘천길잡이의 집	033-242-8296
충북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043-257-8297
전북	상담소 달림	063-232-8297
전남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061-753-3644,3654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061-662-8296~7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061-276-8297
경북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054-231-1402
경남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055-246-8297~8
	여성인권상담소	055-273-2241/2261
제주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064-751-8297

임신·출산 지원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구분	내용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가정도 가능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단축형·표준형·연장형)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table><tr><th rowspan="2">태아 유형</th><th rowspan="2">출산 순위</th><th colspan="3">서비스 기간</th></tr><tr><th>단축</th><th>표준</th><th>연장</th></tr><tr><td rowspan="3">단태아</td><td>첫째아</td><td>5일</td><td>10일</td><td>15일</td></tr><tr><td>둘째아</td><td>10일</td><td>15일</td><td>20일</td></tr><tr><td>셋째아 이상</td><td>10일</td><td>15일</td><td>20일</td></tr><tr><td rowspan="2">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td><td>인력 1명</td><td>10일</td><td>15일</td><td>20일</td></tr><tr><td>인력 2명</td><td>10일</td><td>15일</td><td>20일</td></tr><tr><td rowspan="2">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td><td>인력 2명</td><td>15일</td><td>25일</td><td>40일</td></tr><tr><td>인력 3명</td><td>15일</td><td>25일</td><td>40일</td></tr></table>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3명	15일	25일	40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3명	15일	25일	40일																																				
이용 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이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구분	내용
대상	• ‘임신헌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19세까지 인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청소년 산모(19세 이하)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이용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본을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 부서로 우편 송부(☎1566-3232 → 4번)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구분	내용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인 경우 140만 원, 분만취약자 20만 원 추가 지원)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이용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또는 카드사(은행)에서 온라인 신청 • 전담 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양 속려기간 모자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입양속려기간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입양속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지원내용	지급 금액
	가정 내 보호지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산후지원 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 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 원
	미혼모가족 복지 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 원
	산후조리원 입소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1주 이용료가 70만 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최대 70만 원
이용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지원 내용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support process for crisis pregnancies and protected births. It starts with '위기임산부' (Crisis Pregnant Woman) leading to '위기임신 초기 상담' (Initial Consultation), which includes '원격진료 및 방문 상담' (Remote and home visits), '현장 상담' (On-site consultation), and '대면 상담' (Face-to-face consultation). This leads to '위기임신 상담·지원' (Crisis Pregnancy Consultation and Support), which includes '원가정 양육 위한' (For maintaining the original family), '산당' (Hospital), '장부 지원 정보제공' (Provision of information on support for relatives), '서비스 연계' (Service linkage), and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This leads to '출산·산전후지원' (Birth and Prenatal/Postnatal Support), which includes '산전후지원' (Prenatal/Postnatal support), '출산' (Birth), and '산후조리 지원' (Postnatal care support). This leads to '사후관리' (Aftercare), which includes '귀가, 원가정 양육' (Return home, maintenance of original family) and '(필요 시 사후 상담 지원)' (Postnatal consultation support if needed). This leads to '보호출산 상담' (Protected Birth Consultation), which includes '보호출산 관련 상담' (Consultation related to protected birth) and '비식별화 조치' (De-identification measures). This leads to '보호출산 지원' (Protected Birth Support), which includes '산전후지원' (Prenatal/Postnatal support), '출산' (Birth), and '산후조리 지원' (Postnatal care support). This leads to '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which includes '출생사실 통보' (Notification of birth facts), '출생등록' (Birth registration), and '임상, 가정, 시설보호 등' (Clinical, home, facility protection, etc.). This leads to '출생증서 작성' (Issuance of birth certificate), which includes '부모 인계사항, 보호출산 계기 등 상담내용 등' (Counseling content such as parent handover, reasons for protected birth, etc.). This leads to '아동정보 기록' (Recording of child information), which includes '아동의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Child's nam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This leads to '이전·영구이전' (Transfer/Permanent transfer), which includes '이전·영구이전' (Transfer/Permanent transfer) and '이전·영구이전' (Transfer/Permanent transfer). This leads to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which includes '정당사익이 우선되는 경우' (When legitimate interests are prioritized) and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 위기임산부 상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 및 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365일 24시간 안심상담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양육 등의 정보 안내, 서비스 연계 등)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6개소), 위기임산부 핫라인(☎1308) - 보호출산: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 아동보호: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
문의	- 상담 전화 ☎1308,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www.1308.or.kr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16개소)

● 위기임상부 지역상담기관 연락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애란원	02-363-14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문로길 138
부산광역시	마리아모성원	051-250-5477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남로 7 마리아모성원
대구광역시	가톨릭푸름터	053-763-13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32길 96-11(황금동)
인천광역시	인천자모원	032-772-2071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50번길 23-2(경동)
광주광역시	엔젤하우스	062-655-1308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자모원	042-721-6934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울산광역시	미혼모의집 물푸레	055-244-1308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0길 16
경기도(북부)	천사의 집	031-858-200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 39-74
경기도(남부)	광명 아우름	010-4257-7722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3층(예원빌딩)
강원특별자치도	마리아의 집	033-263-627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쥬2길 16-3
충청북도	새생명지원센터	043-211-305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량로3번길 40 2층(조은빌딩, 주중동849)
충청남도	구세군 아름드리	070-4151-76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유량동 120)
전북특별자치도	기쁨의하우스	070-5165-7576	전북 익산시 배산로3길 24-19
전라남도	성모의 집	061-277-1308	전남 목포시 원호길5번길 24
경상북도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054-715-1326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3층
경상남도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055-231-058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제주특별자치도	애서원	064-773-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 4길 30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교육·상담과 문화 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자기주도적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전문 성교육기관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 아동·청소년·양육자·청소년 관계자 등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체험형 성교육(다양한 체험교구를 활용한 교육 운영) - 찾아가는 성교육(성교육이 필요한 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진행) • 문화활동 - 캠프, 캠페인 • 성교육 상담 및 연계 - 성심리·성행동·성문제 관련 - 성폭력 피해·가해 상담 등
문의	•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58개소) 연락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시립아해 청소년성문화센터	02-2677-9220	부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051-558-1224
	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02-6380-7480		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	051-303-9622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02-950-9651~4		탄생의신비관 청소년성문화센터	051-508-1808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02-2204-3170		탄생이동형1 청소년성문화센터	051-508-1308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02-3012-1318		탄생이동형2 청소년성문화센터	051-508-1308
	드림(양천)청소년성문화센터	02-2606-1375	대구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053-653-7755
	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02-2207-7480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053-657-1388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02-823-7942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052-256-1318

지역	기관명	연락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 성문화센터(소다센터)	032-446-1318	광주	광주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62-522-1388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032-500-2252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062-973-9553
경기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	031-475-3253	대전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42-222-8847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031-954-8050	강원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033-255-6651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032-663-1318		강원도이동형청소년 성문화센터	070-8855-3471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031-8015-3900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033-655-1318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031-251-1822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033-745-1318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031-548-1318	제주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4-760-6451
	안양시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031-360-3088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4-728-3499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043-258-8001	충남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041-592-1388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043-856-7816		충남홍성 청소년성문화센터	041-406-7000
				충남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041-337-1585
전북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3-463-1230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061-554-1318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3-251-1318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1-272-1318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3-832-1399		여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070-7733-1320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3-532-1388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1-745-0222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054-436-0218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055-831-4567
	포항시청소년성문화센터	054-240-9184		경남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055-711-1341
	경북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054-858-7179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055-716-0311